

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정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0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4일

발 의 자: 유정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경기문, 김규남,
김기덕, 김성준, 김영옥,
김용일, 김춘곤, 남창진,
박승진, 박영한, 서준오,
아이수루, 유정인, 이영실,
이종태, 임종국, 최민규,
최재란, 홍국표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지역서점 활성화를 촉진하고, 관련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와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치구가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의2제2항 신설)
- 나. 시장이 시 공사·공단이나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하여 지역서점의 도서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의2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출판문화산업 진흥법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의 제목“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)”를“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6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가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 공사·공단이나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하여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2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)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6조의2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가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 공사·공단이나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하여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.</p>